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기업의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**  재세[2018]51호  각 성•자치구•직할시•계획단열시 재정청(국), 국가세무국, 지방세무국, 신장(新疆)생산건설병단 재정국 :  기업의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.  1. 기업이 지출한 직원교육경비는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계산 시 임금•급여 총액의 8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, 초과부분은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.  2. 이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.  재정부  세무총국  2018년 5월 7일 |  | **关于企业职工教育经费税前扣除**  **政策的通知**  财税〔2018〕51号  各省、自治区、直辖市、计划单列市财政厅（局）、国家税务局、地方税务局，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：  　　为鼓励企业加大职工教育投入，现就企业职工教育经费税前扣除政策通知如下：  　　一、企业发生的职工教育经费支出，不超过工资薪金总额8%的部分，准予在计算企业所得税应纳税所得额时扣除；超过部分，准予在以后纳税年度结转扣除。  　　二、本通知自2018年1月1日起执行。  财政部  税务总局  2018年5月7日 |